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가합5863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3.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669,660원 및 그중 387,822,080원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0. 10.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20. 7. 2. 접수 D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신용보증내용 등) ① 피고 A, B은 피고 A의 수출신용보증 신청에 따라 원고가 부담
하는 신용보증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신용보증한도: 384,750,000원
- 보증채무최고액: 500,175,000원
- 보증기간: 2016. 11. 13. ~ 2020. 11. 11.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
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피고 A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
더라도 피고 A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피고 A와 원고는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겠습니다.

제24조(연대보증인) ① 피고 B은 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나. 원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한도 384,750,000원, 보증기간 2020. 11. 11.까지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 A는 그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27,5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7. 15.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1.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387,822,080원(= 원금 384,750,000원 + 이자 3,072,0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2,847,580원(= 1,408,690원 + 1,438,89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의 내부규정인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련 약관 및 약정서 또는 규정 및 이 요령에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연체금 산정시 적용할 연체이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 10%로 정하고 있다.

사. 피고 A는 2020. 7.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20. 7. 2. 접수 D로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390,669,660원 및 그중 대출원리금 387,822,0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24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관련 비용을 상환하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0. 9. 11. 피고 A의 대출원리금채무 387,822,080원을 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 2,847,580원을 지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669,660원(= 대출원리금채무 387,822,080원 + 채권보전비용 2,847,580원) 및 그중 대출원리금 387,822,0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0. 26.까지는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2항, 원고의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7. 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13일 뒤인 2020. 7. 15. 피고 A가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법원행정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이 피고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반면, 2020. 7.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83억 8,200만 원의 채무, F은행에 대하여 2억 6,500만 원의 채무, G에 대한 2,8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 A가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 C에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의 미수금채권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채권은 미수금채권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미수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의 선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0. 7. 2.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이종찬, 판사 전승환